

2018회계연도 안전총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746호, 제747호, 제748호

다. 제출일자 : 2019. 5. 31.

라. 회부일자 : 2019. 6. 3.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80,576	80,576	98,298	89,133	388	8,778	90.7%

- 세입예산현액은 805억 7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982억 9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0.7%인 831억 33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88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87억 78백만원은 미수납됨.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182,669	3,536	11,441	45 (-45)	268 (-268)	95,053	197,646	189,120	4,452	4,267	185	4,074 (2.1%)

- 당초 예산액 1,826억 6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36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114억 4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76억 46백만원으로, 이 중 95.7%인 1,891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2.2%인 44억 5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40억 7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268백만원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에서 발생함.

○ 변경

- 예산의 변경은 1건에 45백만원으로
- ‘기본경비(도로사업소)’에서 발생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114억 42백만원으로
- 무상양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 52억 57백만원
- 점재교 건설 14억 36백만원
-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13억 95백만원 등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25개 사업에 950억 53백만원으로
- 2018.11월 조직개편에 따라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로 4개 사업 428억 54백만원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에서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로 3개 사업 1억 16백만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에서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로 1개 사업 4억 14백만원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로
16개 사업 510억 34백만원
- 품질시험소 총무과에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로
1개 사업 6억 35백만원을 이체함.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4건에 42억 67백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8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976억 46백만원 대비 2.3%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0억 7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976억 46백만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8	197,646	4,074	2.1%	
2017	219,895	7,962	3.6	
2016	219,518	5,691	2.6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37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3,837백만원

나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5,900	3,462	-	-	-	-	9,362	2,361	4,986	4,986	-	2,014 (21.5%)

- 당초예산액 5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6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억 62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억 61백만원 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8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인 20억 1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2)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3)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4건에 49억 8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3억 62백만원 대비 53.3%임.

4)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0억 1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93억 62백만원 대비 21.5%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8	9,362	2,014	21.5%	
2017	20,715	333	1.6%	
2016	52,607	29,703	56.5%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0억 5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9백만원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3,000	3,000	0	0	0	0	0%

○ 세입예산현액은 30억원이고, 실수납액은 0원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117,948	12,087	-	33	-	-	130,035	68,089	52,974	51,469	1,505	8,972 (6.9%)

○ 예산액 1,179억 4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 8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0억 3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80억 89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529억 7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89억 7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의 변경은 2건에 33백만원으로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에서 발생함.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3건에 514억 69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건에 15억 5백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529억 74백만원은 예산현액 1,300억 35백만원 대비 40.7%임(명시이월 39.6%, 사고이월 1.1%).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89억 72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00억 35백만원 대비 6.9%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18	130,035	8,972	6.9%	
2017	55,481	909	1.6%	
2016	69,332	9,765	14.1%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83억 5천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6억 22백만원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4,746	4,746	4,746	4,746	0	0	100%

-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46백만원이고, 예산액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692,027	100,390	50	1,568 (-1,568)	-	23,817	792,468	630,666	110,225	88,263	21,962	51,577 (6.5%)

- 예산액 6,920억 2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3억 9천만원, 예비비 사용액 5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24억 6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306억 66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2억 2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15억 7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예산 변경은 12건에 15억 68백만원으로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1건에 3억 7천만원
- 고가차도 철거 2건에 2억 34백만원
-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1건에 1억 98백만원
-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1건에 1억 47백만원등임.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1건에 5천만원으로
-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사업 내 도로관리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판결금임.

○ 이 체

- 예산 이체는 4개 사업에 238억 17백만원으로
- 2018.11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로 이체하였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47건에 882억 63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219억 62백만원으로,

전체 이월비 1,102억 25백만원은 예산현액 7,924억 68백만원 대비 13.9%임(명시이월 11.1%, 사고이월 2.8%).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15억 7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7,924억 68백만원 대비 6.5%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18	792,468	51,577	6.5%	
2017	700,814	34,101	4.9%	
2016	681,888	37,080	5.4%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85억 15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230억 62백만원

마 .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차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지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18	45,508	-	-	386	13,451	-	31,671	45,508	31,017	14,491	-	-

- 수입은 이자수입 3억 86백만원, 예치금회수 134억 51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316억 71백만원을 합한 455억 8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총액의 68.2%인 310억 17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4억 91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80,576	80,576	98,298	89,133	388	8,778	90.7%
2017	156,678	156,678	170,401	151,453	299	18,649	88.9%
2016	145,511	145,511	172,463	156,550	130	15,783	90.8%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805억 76백만원이었으나 실제 982억 9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0.7%인 891억 33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 88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87억 78백만원은 미수납됨.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22%로 총 177억 22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2017년 결산 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137억 23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수추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수추계 차가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차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46,810	49,507	48,565	2,697	○ 재산가격 평가 및 신규입찰 낙찰가 상승, 입찰 지연으로 인한 일시사용 대부로 징수에 따른 임대료 증가 ○ 신규 광고사용자 선정 입찰에 따른 사용료 증가
214-09 기타사업수입	9,600	8,820	8,803	△780	○ 2018년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세출예산 만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2018년도 공동구 관리비용 부과시 2017년도 유지관리 비용 정산잔액을 공제함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223-03 변상금	0	1,576	3	1,576	○ 지하도상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 발생 (강남터미널상가 14개 점포 및 잠실광장 11호)
224-06 그외수입	18,179	25,881	24,791	7,702	○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증가 (대행사업비 반납액은 예측이 곤란하여 최근 n년간 평균액으로 추계하므로, 예산액과 실 징수결정액 간 차액 발생) ○ 기타 공사 및 용역의 정산액, 소송관련 비용 등 사전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간 차이 발생
225-01 지난연도수입	1,405	7,234	2,120	5,829	지하상가 임대료, 과태료 등 채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채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차이 발생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입예산액 468억 1천만원 대비 105.7%인 495억 7백만원을 징수결정함.
 -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의한 세입이며, 금회 재산가격 평가 및 신규입찰 낙찰가 상승, 입찰 지연으로 인한 일시사용 대부료 징수에 따라 임대료가 증가하고, 신규 광고사용자 선정·입찰에 따른 사용료 증가에 따른 것임.

- **기타사업수입**은 '18년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세출 예산(인건비 4,533백만원, 일반경비 2,503백만원, 수선유지비 2,079백만원, 간접관리비 485백만원)만큼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으나
 - '18.5월과 11월에 공동구 관리비용 부과 시 2017년도 유지관리 비용 정산잔액 7억 8천만원을 공제함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정산잔액을 정확하게 예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은 인정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다음으로, **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181억 7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58억 81백만원으로 77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 이는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및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증가분(6,056백만원 = 2,818백만원(지하도상가) + 3,238백만원(자동차전용도로)) 발생과 소송관련 비용 등 사전에 정확한 규모 예측이

어려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주요 내역

연번	기타잡수입	실제수납액 (백만원)	잡수입 처리사유
1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건설혁신과)	12,618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도로시설과)	7,267	"
3	포장공사 맨홀정비 청구수입 등 (6개 도로사업소)	4,822	"

다) 미수납액

○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87억 78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9억 42백만원
- 기타사용료	1억 24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17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1백만원
- 과징금	14백만원
- 변상금	15억 73백만원
- 과태료	1억 97백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90백만원
- 그외수입	11억 91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47억 28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은 47억 28백만원으로 전년(131억 44백만원) 대비 84억 16백만원이 감소했으나 전체 미수납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 72억 34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9%인 21억 2천만원에 불과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표] 참조), ‘납세태만’이 43억 32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가 26억 9백만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음.
 - 납세태만과 관련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조사해 압류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이 중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30%를 차지하는 “기타”는 부과반발, 사망, 징수곤란 장기체납액 등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에도 불구하고
 - 서울시에서 조차 “기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 및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바, 미수납액 중 기타 사유로

차년도 이월된 세입의 관리가 다소 부실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8,777,783	100%
무재산		326,448	4%
행방불명		31,813	0%
납세태만		4,331,503	49%
폐업 또는 부도		19,974	0%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0	0%
격리 또는 입원		0	0%
소송계류		1,458,972	17%
국외이주		0	0%
자금압박		0	0%
기타		2,609,073	30%

라) 결손처분

- 안전총괄본부 일반회계 결손처분 총액은 3억 86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난연도수입 3억 86백만원

[표] 일반회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불납결손액		386,148
시효소멸		322,260
기타		63,888

- ‘시효소멸’이 사유인 결손처분액은 3억 22백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83%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효소멸은 「지방세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 행사 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발생하므로 시효소멸에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예방적 특별관리를 통해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182,669	3,536	11,441	45 (-45)	268 (-268)	95,053	197,646	189,120	4,452	4,267	185	4,074 (2.1%)
2017	212,987	6,497	411	8 (-8)	54 (-54)	-	219,895	208,443	3,490	-	3,490	7,962 (3.6%)
2016	216,080	2,680	758	190 (-190)	1,174 (-1,174)	-	219,518	207,330	6,497	5,880	617	5,691 (2.6%)

가) 개 요

- 예산액 1,826억 6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36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114억 41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76억 46백만원으로, 이 중 95.7%인 1,891억 2천만원을 지출하고 2.3%인 44억 5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40억 7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40억 74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9건([표] 참조)인데,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안전총괄과	도시안전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0	22	38	62.8%
2	안전총괄과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	90	57	33	36.7%
3	안전총괄과	시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100	0	100	100%
4	건설혁신과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67	38	29	43.9%
5	건설혁신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5	3	1	30%
6	도로계획과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7,541	6,903	638	8.5%
7	도로계획과	총괄건설정책자문단 운영	16	3	13	84.1%
8	도로관리과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	12	0	12	100%
9	도로관리과	도로함몰 예방 사업	5,836	4,033	1,115	19.1%

- 먼저 ‘서울안전탐사단 관리운영’은 서울시 안전관리 정책에 활용 가능한 선진제도의 실용화 및 선진 안전기술의 국내 테스트 및 시범적용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9천만원 중 36.7%인 3천 3백만원이 불용됨.

- 서울시는 ‘소공간 소화기’ 이외에는 국내 적용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한 우수기술을 발굴하지 못하였고, 2018년에 서울기술연구원
구원이 개관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지속성 있게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무관리비(7천만원) 중 1
천 3백만원을 불용하였으며,

- 또한 안전탐사단(단장: 윤명오 교수) 자문회의 결과 적합한 해
외 우수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및 해외방문
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인국외여비(1천만원) 및 외
빈초청여비(1천만원)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임.
- 이처럼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여 추진
동력을 잃고 중간 타절함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소공간 소화기’를 시립
노인요양시설(3개소:중량, 중계, 송파)과 시립 무료양로원(2개소:
수락, 고덕) 총 5개소에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 ‘소공간 소화기’의 경우 2015년에 이미 국내에 상용화되어 있
던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진 안전기술을 국내 테스트 및
시범적용을 통해 검증하여 도입하겠다는 본 사업의 당초 취지
와 부합했는지 여부도 검증이 필요해보임.

〈 소공간 소화기〉

- ▶ 전기배전함 등 밀폐공간에 스티커 또는 바 형태로 부착
- ▶ 화재 시 온도 상승을 감지하여 소화성분의 미세한 입자들이
자동으로 기화되어 불을 끄는 기술



AFIX-S 적용범위

모델 (Series)	제품 크기 (mm)	보호 용량 (mm)	보호 용량 (m ³)
AFIX-S1	130H x 90W x 19D	250(W) x 140(D) x 400(H)	0.014m ³

AFIX-S 작동온도: 100°C 이상
AFIX-S 설치방법: 함체 내 천정부 중앙부착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비상시 긴급 호출 및 대피 등이 가능한 안전관리 모델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전액을 불용함.
 - 이는 건설공사장에 적용될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했던 것에 기인함.
 - 선행기술적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실시간 근로자 위치파악 기술과 관련하여 ‘16년과 ‘17년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건설현장의 특수성¹⁾ 및 현장근로자의 착용 거부 등의 사유로 실패한 이력이 있음.

1) ① 건설현장이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수시로 발생
 ② 건설장비 등에 의한 타격으로 측정장비와 기계의 잦은 고장 발생
 ③ 측정장비의 설치와 해체작업 등이 다른 공사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발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 비상알림 등까지 확대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2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안전총괄과-5148('18.4.20.), 안전총괄과-6765('18.6.1.)) 결과,
 -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선례와 같이 건설현장의 유동적인 조건을 감안할때 근로자 위치확인이 주요내용인 해당 시범사업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설계도서가 부재하므로 과업의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전액 불용한 것임.
 - 이는 예산편성 당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세운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사례라 할 것인 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 위탁관리'사업은 2개 철도건널목(오류1, 항리3)의 월 2회 정기점검을 철도건널목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예산현액 1천 2백만원 전액을 불용함.
- 이는 SH공사의 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철도시설 개선공사로 군 전용선 운행이 '16년 9월 중단되었다가 '17년 5월 운행 재개 예정이었으나 철도시설 개선협의 지연으로 인해 해당 건널목이 운영되지 않아 유지관리가 불필요해 위탁관리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임.
 -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전액 불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복되는 불용으로 인한 예산사용의 비효율

을 낳고 있는바,

- 향후 사업 계획 시 연관되는 타 사업의 추진을 과도하게 낙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추진 가능여부를 냉정하게 분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음.

○ ‘(가칭)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운영’은 서울시 자연과학분야(기술분야) 도시문제 해결을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 현액 67억 57백만원 중 1%인 6천5백만원을 불용함.

- 이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 6명을 3개월간 임시로 고용해 정식 연구원 인력 채용 전 기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규직 인원의 일부를 앞당겨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출연금은 66억 77백만원으로 전액 지출완료되었는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²⁾에 따라 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술연구원이 출연금에 대해 서울시에 제출한 2018회계

2) 제12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 45.7%, 이월 27.3%, 집행잔액 27.0%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보이고 있음.

[표] 서울기술연구원 2018 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집행잔액	
			세부내역	금액	세부내역	금액
연구사업비	1,850	5	과업기간이 '19년에 종료	1,831	불용액	14
경영사업비	2,178	1,722	-	-	불용액	456
인건비	2,161	827	-	-	불용액	1,334
기본재산	500	500	-	-	-	-
합계	6,689 [‡]	3,054		1,831		1,804

※ 국가R&D수탁과제 20백만원 제외

‡: 6,689백만원=6,677백만원(서울시 출연금)+12백만원(금융기관 이자수입)

- 먼저, 연구사업비 18억 5천만원 중 99.7%인 18억 31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는 연구원 개원 및 인력 채용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과업 개시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이며,
- 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21억 61백만원 중 61.7%인 13억 34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18.3.27일 기술연구원 설립 이후 당초 52명의 정원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으나 인력을 일괄채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채용('18.9.17., 19명 채용)함에 따른 것임.
- 결국, 개원 지연과 인력충원 지연 등으로 기술연구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정상운영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편성 연구사업비의 대부분인 18억 31백만원이 이월되고, 편성 인건비의 절반

이상인 13억 34백만원이 미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함.

- 한편, 총 집행잔액(결산잉여금) 18억 8백만원(금융기관 이자수입 4백만원 포함)은 「2019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액 다음연도 예산(수입)으로 편성하고, 상당 금액만큼 출연금을 감액 편성 한다는 방침이어서 2020 회계연도 예산 심사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예산전용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2억 6천 5백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에서 3백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함.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안전 총괄	재난관리	안전마을 만들기	308-01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85	265	0	'18.8.2	자치구 사업 공모결과 당초 예산과 다르게 자본적 성격의 사업 수요가 많아, 경상보조금을 자본보조금을 전용하여 집행
		재난관리	안전마을 만들기	403-01 자치단체자본 보조	0	0	265		
2	도로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포장 품질향상	201-02 공공운영비	44	3	0	'18.11.23	도로조사 업무를 실시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금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전용하여 집행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포장 품질향상	101-04 기간제근로자 증보수	18	0	3		

- 먼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담장도색,

양심거울 및 소화기 설치, 야간 방법 순찰’ 등 경상적 사업요소가 많아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금회 사업예정 자치구의 주요사업이 ‘LED 보안등 설치, 보도 환경개선, 조명 설치’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를 이룸에 따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및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다음으로 ‘도로포장 품질향상’사업의 예산 전용은 도로포장 조사업무를 위해 채용중인 기간제근로자(1명)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 기 편성된 예산은 1천 8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당시 ‘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0호, ‘17.09.19.)를 기준(시급9,211원[7,530원(최저임금) × 122%] / 월급1,925,09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소요예산 부족으로 추가예산 3백만원을 충당한 것임.

[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및 부족 예산 (‘18.11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예산 현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가집행 (계획)	부족액
18,468	16,917	1,549	4,500	2,951

라) 이 체

-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8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안전총괄본부 내 건설혁신과가 신설되어 기존 시설안전과의 건설정책, 건설업관리, 하도급 관련 업무, 기존 보도환경개선과의 지하도상가 업무,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금e바로 시스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 기존 보도환경개선과 업무는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보도(歩道) 관련 업무는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로 이관되고, 도로관리과는 기존 업무에 추가로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 업무를 이관받았음.

[표] 예산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이체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계			95,055	95,055	95,055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4	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40,081	40,08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			40,08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이체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도상가 개보수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2,370	2,37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개보수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 본적위탁사업비			2,37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01-01 사무관리비	336	336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01-01 사무관리비			336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2	5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8	8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			8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 비	5	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 비			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37,701	37,70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37,70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70	7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7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27	27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도로사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27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4	4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	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6	6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이체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6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	2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2	1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5	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 비				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303-01 포상금	5	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303-01 포상금				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153	15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상 보행지장 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15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305-01 배상금등	2,232	2,23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305-01 배상금등				2,23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401-01 시설비	9,818	9,818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401-01 시설비				9,818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73	7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7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7-02 전산개발비	20	2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7-02 전산개발비				2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중로41길 주변 보도블럭 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	4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중로41길 주변 보도블럭 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2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이체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창신5가길 보도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10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새문안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통일로 18길 보도블럭 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	3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통일로 18길 보도블럭 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숙대입구역 주변 보도정비 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	20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숙대입구역 주변 보도정비 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광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	6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광초등학교 앞 보도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긴고량로 도로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	5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긴고량로 도로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지하철역 입구 보도 및 장애인블럭 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	16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하철역 입구 보도 및 장애인블럭 정비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60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2	18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 (시민참여)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7	67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건설업 등록 및 처분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67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	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이체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1	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	301-11 기타보상금			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	4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4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 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 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	4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 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47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 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47	347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건설혁신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 로)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홍보예산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 로)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	22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18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18	18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201-01 사무관리비			5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201-01 사무관리비	51	51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201-02 공공운영비			4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201-02 공공운영비	44	44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401-01 시설비			476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401-01 시설비	476	476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401-01 시설비			4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품질시험소 총무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401-01 시설비	45	45		'18.11.07	조직개편 (2018.11.1.일자)

마) 변경사용

-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1건에 4천 5백만원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변경하여 충당·사용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관리	기본경비 (도로사업소)	기본경비 (도로사업소 6개소)	202-01 국내여비	615	45	-	'18.11.29	도로사업소 사무관리비 부족에 따라 국내여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
		기본경비 (도로사업소)	기본경비 (도로사업소 6개소)	201-01 사무관리비	872	-	45		

- 이는 도로사업소 차고 설치, 터널관리사무소 신설 등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로 기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부족함에 따른 것이나 조직개편 이외에 사항들은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부대비용(사무관리비) 증가 원인]

- '18. 6월 남부도로사업소 제설기지 완공
- '18. 8월 동부도로사업소 위례터널관리사무소 신설
- '18. 11월 성동도로사업소 시험분석차량 차고 구축
: 도로포장연구센터 → 조직개편으로 도로관리과 이관(포장조사평가팀 신설)

바)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사업 등과 관련해 총 13건에 114억 42백만원을 지출함.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1,325	2018-01-10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등 지급
도로계획과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70	2018-06-25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등 지급
도로계획과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61	2018-01-12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4공구) 배상금	591	2018-01-31	주택분양 관련 부당이금금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기차촌~북한산길 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배상금	204	2018-01-30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겸재교 건설	1,436	2018-05-3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8공구) 배상금	347	2018-08-02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배상금	530	2018-10-04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 소송	5,257	2018-11-19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환매권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327	2018-12-26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사가정갈~암사동간 도로개설(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705	2018-05-3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관리과	서부도로사업소 배상금	409	2018-01-31	공무직 공무상 상해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도로관리과	동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80	2018-08-17	특별시도의 관리책임 관련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합계	13건	11,442		

○ 금회 예비비 지출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총 13건 중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이 6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이 2건이며 그 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토지보상 관련 행정소송”, “공무직 공무상 상해 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음.

- 이 중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6건은 서울시가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후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등이 발

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³⁾에 따라 원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환매권 통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에 패소 또는 일부패소하여 판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사료됨.
- 여기서, 환매권 미통지가 단순 행정적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의도된 행정편의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처럼 시민의 법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에 이르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 지급까지 하는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3)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내용
도로계획과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1,325	2018-01-10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수용 후 마곡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서울시 패소(1심), 항소포기 결정)
도로계획과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	70	2018-06-25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수용(도로) 후 마곡도시개발사업(도로)으로 변경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서울시 패소(1심), 항소포기 결정)
도로계획과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61	2018-01-12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수용 후 사업변경이 있었으나 원고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서울시 패소(1심), 항소포기 결정)
도로계획과	가지촌~북한산길 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배상금	204	2018-01-30	'가지촌~북한산길 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후 서울시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협의취득했으나 이후 은평뉴타운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서울시 패소(1심), 항소포기 결정)
도로계획과	우면산터널 재정부담 배상금	530	2018-10-04	'우면산터널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해당 토지가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서울시 패소, 항소포기 결정)
도로계획과	환매권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	327	2018-12-26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 협의취득 후 해당 토지를 마곡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화해권고결정 수용)
합계	6건	2,617		

- 그밖에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2건은 발주청인 서울시의 예산 부족 또는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장 직원의 간접노무비, 현장사무실 운

영비, 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추가발생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경재교 건설	1,436	2018-05-3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도로계획과	사가정갈~암사동간 도로개설(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705	2018-05-3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합계	2건	2,141		

- 패소판결에 따라 6~15% 달하는 높은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 이처럼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예산 사용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간접공사비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5억 91백만원)와 8공구(3억 47백만원)에서 각각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 먼저 4공구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원고)에게 한국주택공사(LH) 공급 아파트 분양을 알선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원고는 분양가에 도로

및 급·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비용이 포함되었다며 소를 제기하고 이에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것임.

- 패소원인은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 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나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대금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8공구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원고)가 토지보상금이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보상비 증액을 요구한 건으로 서울시 패소에 따라 3억 47백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서울시 소유의 사전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양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유상으로 매각하여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한 건임.

4) 관련 대법원 판례 요지(‘11.6.23.) 전원 합의체 판결

▷ 사업시행자는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

※ 생활기본시설: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 간선시설(주택법 제23조제17호):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해당 민사소송의 패소 및 항소포기 결정에 따라 52억 57백만원의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판결금 중 원금이 43억 85백만원이고 나머지 8억 72백만원이 이자비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와 같은 행정착오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표] 판결금 세부산출내역

(단위: 원)

원고	계	원 금	이 자		비고
			'15.2.26.~'18.10.5. (연 5%)	'18.10.6.~'18.11.19. (연 15%)	
한국토지주택공사	5,256,536,669	4,384,451,290	791,003,061	81,082,318	

- ‘서부도로사업소 배상금’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한 공무원 근로자(원고)가 서울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8년 1월 11일 3심 판결(확정) 결과 서울시가 전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4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서부도로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2011년 5월 관내 지하차도에서 배수로 준설작업을 실시하다 이 구간을 지나던 덤프트럭의 작업차량 후미 추돌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으며,

- 사고 이후 치료 및 장기요양 중 2013년 6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시 사고가 서울시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대책 미강구 등 과실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 '17년 2월 8차까지의 서울시 변론에도 불구하고 3월 24일 1심에서 배상책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 이에 서울시는 안전조치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사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및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소를 제기(항소:'17.4.10., 상고:'17.11.2.)했으나 3심 판결('18.1.11.) 결과 전부패소하게 되어 '18.1.31일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 한편, 해당 판결 이후 서울시는 가해차량 소유회사(효명개발),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에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373, '18.3.6.)을 제기하고 승소('18.9.19.)하여 3억 68백만원을 구상금으로 받아 세입처리한 바 있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도로포장 품질향상' 등 총 3건에 1억 84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	201-01 사무관리비	77	5	6.5%
도로관리과	도로포장 품질향상	401-01 시설비	521	78	15%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401-01 시설비	7,958	101	1.3%
계			8,556	184	

- ‘도로포장 품질향상’사업의 시설비 중 7천 8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도로하부용 골재 품질향상 방안 제시 및 적용성 검토용역(2차)”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준공기한이 ‘19.8월로 연기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임.
- 이와 관련하여 1차년도 용역 당시 건설기술 심의, 입찰공고 준비, 유찰에 따른 재공고(3회),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전 필요한 행정사항 처리로 인해 착수(‘17.06.29.)가 늦어져 ‘18년 4월 준공되고, 이에 따라 2차년도 용역도 늦어진 것으로,

[표] 용역계약 현황

연도	용역명	용역비	수행업체	용역기간
2017	도로하부용 골재 품질향상 방안 제시 및 적용성 검토용역(1차)	182백만원	(주)서영엔지니어링	‘17.6.29.~‘18.4.24.
2018	도로하부용 골재 품질향상 방안 제시 및 적용성 검토용역(2차)	195백만원	(주)서영엔지니어링	‘18.4.25.~‘19.2.18.

- 1차년도 용역 발주 지연에 따라 연쇄적으로 2차년도 용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연례적인 사고이월을 발생하였는 바, 용역 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해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5,900	3,462	-	-	-	-	9,362	2,361	4,986	4,986	-	2,014 (21.5%)
2017	15,058	5,657	-	-	-	-	20,715	16,920	3,462	2,000	1,462	333 (1.6%)
2016	5,300	47,307	-	263 (-263)	-	-	52,607	17,247	5,657	910	4,747	29,703 (56.5%)

가) 개 요

- 당초예산액 5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6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억 62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억 61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8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인 20억 14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교통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5%인 20억 14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 1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교통개선분담금계정)	2,000	0	2,000	100%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서북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왕복 4차로 연장 5.76km의 소형차 전용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 20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2017회계연도 예산 명시이월 사유는 분당선 연장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됨('16.6.27.)에 따라 교통수요 재분석 시행 및 종로구지역 연결방안 등이 검토중에 있어 당해연도 내 토지보상 등 사업비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었으며,
 -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이월예산(보상비)만으로 조속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정체 가중을 우려한 도로개설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15년 200억원을 보상비로 편성하고, 자하문길 교통정체 가중 등의 사유로 종로지역에서 사업시행을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도시계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억원 전액을 2016년으로 명시이월했다가 2016년에도

명시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 또 다시 2017년 편성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했다가 2018년 불용 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정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대규모 예산이 반복적으로 휴면상태에 빠지는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해당없음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3,000	3,000	0	0	0	0	0%
2017	20,715	20,715	20,715	20,715	0	0	100%
2016	13,224	13,224	13,224	13,224	0	0	100%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30억원이고 실수납액은 0원인데, 이는 광역도로로 지정·추진되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 확장’사업의 국고보조금 30억원이 국토부 내부사정에 의해 교부가 불가해짐에 따른 것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117,948	12,087	-	33	-	-	130,035	68,089	52,974	51,469	1,505	8,972 (6.9%)
2017	35,762	19,719	-	-	-	-	55,481	42,485	12,087	9,073	3,014	909 (1.6%)
2016	19,843	49,488	-	230 (-230)	-	-	69,332	39,848	19,719	1,123	18,596	9,765 (14.1%)

가) 개 요

- 예산액 1,179억 4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억 8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00억 35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80억 89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529억 7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89억 72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89억 72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과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이상 2건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10,061	954	8,350	83%
2	도로계획과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16,795	16,334	461	2.7%

-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은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구리시 간 광역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00억 61백만원 중 83%인 83억 5천만원이 불용됨.

- 이는 구리IC 인근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요구 민원(수직 방음벽→방음터널로 변경)에 따라 방음터널 추가설계 등 새로운 과업 발생⁵⁾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19.12.31. 준공)됨에 따라 공사비 지출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한 것임.
- 참고로, 동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⁶⁾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 구리시, 민자 구간으로 이뤄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통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음.



[그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공사 위치도

- 5) 방음터널 신설, 교량 2개소 신설, 동창IC~구리IC 구간 추가
- 6)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한편, 동일한 사유로 2018년 당초 본 예산 10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을 감추경한 바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현액 200억 61백만원 중 100억원을 감추경하고, 83억 5천만원을 불용하는 비효율을 초래했다 할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구리시 간 협약⁷⁾에 의해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의 통합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구리시 구간의 발생민원이 사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변경사용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의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8.2.23일에 3천만원, ‘18.12.21일에 3백만원 총 2건 발생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계획	광역도로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1-01 시설비	42,180	30	-	'18.2.23	공사계약 조달 수수료 추가비용 발생으로 시설부대비가 증가하여 시설비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변경 사용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1-03 시설부대비	20	-	30		

7)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2015.12.)

		통시설특별 회계)	시계) 확장						
2	도로 계획	광역도로 건설(광역교 통시설특별 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 시계) 확장	401-01 시설비	91,943	3	'18.12.21	조달청 공사계약 취급 수수료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	
		광역도로 건설(광역교 통시설특별 회계)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 시계) 확장	401-03 시설부대비	50	3			

- 변경사용 2건 모두 조달수수료 납부를 위한 것으로 '18.2.23일자 변경 건은 2공구(2천 58만원) 및 3공구(1천 250만원) 조달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함이었고, '18.12.21일자 변경 건은 수락고가 주변 방음벽 설치 변경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조달청에 단가 적정성 검토 요청에 대한 수수료(1천 233만원)를 납부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시설비로 조달 수수료 등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계약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변경사용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17.7.)” 및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서울시, '17.6.)”상 시설부대비 집행가능 내역에 공사계약 수수료를 비롯하여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당시 이를 간과한 것으로 여겨져 주의가 요구됨.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에서 7억 48백만원,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사업에서 7억 57백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임.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1-01 시설비	93,382	600	0.6%
		401-02 감리비	1,596	148	9.3%
도로계획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10,061	757	7.5%
계			105,039	1,505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8	4,746	4,746	4,746	4,746	0	0	100%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47억 46백만원이고, 예산액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18	692,027	100,390	50	1,568 (-1,568)	-	23,817	792,468	630,666	110,225	88,263	21,962	51,577 (6.5%)
2017	626,896	73,918	-	1,337 (-1,337)	310 (-310)	-	700,814	566,323	100,390	80	100,310	34,101 (4.8%)
2016	624,791	57,097	-	2,293 (-2,293)	20 (-20)	-	681,888	563,729	81,079	51,046	30,033	37,080 (5.4%)

가) 개요

- 예산액 6,920억 2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3억 9천만원, 예비비 사용액 5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924억 68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306억 66백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2억 25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15억 7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15억 77백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은 ‘디지털 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등 37건([표] 참조)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21,408	2,998	14,770	69%
2	도로계획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3,403	2,490	6,713	50.1%
3	도로계획과	교차로 구조개선	230	84	146	63.4%
4	도로계획과	고가차도 철거	14,730	1,073	3,807	25.8%
5	도로계획과	아리수로 교통시설물 설치	500	318	182	36.3%
6	도로관리과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67,676	65,505	886	1.3%
7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7,407	7,254	3,056	17.6%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8	도로시설과	내곡터널외 1개소 유지관리	753	489	264	35.1%
9	도로시설과	두모교 교면포장 정비	3,650	3,142	508	13.9%
10	도로시설과	두모교 외부긴장재 보강	4,780	4,261	519	10.8%
11	도로시설과	서호교 외부긴장재 보강	2,900	2,426	474	16.3%
12	도로시설과	새남터다리 내진성능개선	250	92	158	63.3%
13	도로시설과	독산1교 내진성능개선	200	68	132	66.1%
14	도로시설과	여의하류IC램프교 내진성능개선	597	377	220	36.8%
15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1,356	9,889	1,467	12.9%
16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11,105	10,052	553	5%
17	도로시설과	청계천복개구조물 보수	700	429	271	38.6%
18	도로시설과	도림천복개(좌안) 내진성능개선	2,300	1,278	1,022	44.4%
19	도로시설과	도림천1복개 내진성능개선	587	236	351	59.8%
20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7,127	6,574	553	7.8%
21	도로시설과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116	0	46	40%
22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방호	4	2	2	53.3%
23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8,073	6,884	1,189	14.7%
24	교량안전과	성수대교 보수공사	3,188	2,640	548	17.2%
25	교량안전과	한남대교 보수공사	1,988	1,662	325	16.4%
26	교량안전과	한강대교 외 2개소 우물통 보수보강공사	5,716	5,124	592	10.4%
27	교량안전과	한강상 PSC교량 안전강화	3,712	3,130	582	15.7%
28	교량안전과	교량 점검시설 정비공사	1,153	805	348	30.2%
29	교량안전과	강교 도장 보수공사(연간단가)	500	338	162	32.5%
30	교량안전과	양화대교 보수공사	700	483	217	31.1%
31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태양광 설치	53	13	40	74.9%
32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11,951	11,092	697	5.8%
33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6,131	2,974	681	11.1%
34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14,780	12,343	1,800	12.2%
35	교량안전과	영동2교외 1개소 보수공사	626	395	231	36.9%
36	교량안전과	상계교 등 3개소 보수공사	1,000	688	312	31.2%
37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8,288	5,380	1,060	12.8%

-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은 디지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수출의 다리 지·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지하차도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214억 8백만원 중 69%인 147억 7천만원을 불용함.
- 이 사업은 사업대상부지 소유주인 교학사와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교학사측 신청에 의해 ‘17.8월부터 ‘18.2월까지 가산동 구간(교학사 부지) 실시계획인가가 집행정지되고, 이후 당해 연도 연말까지 손실보상 재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진행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보상비 예산이 불용된 것임.
- 결국 ‘18.12.17일 서울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19.4.5일 교학사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소송 최종판결 결과 승소했으며, ‘19.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결정이 예정된 상태임.
- 이 사업은 ‘13.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각종심의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던 중 ‘14.6월 교학사 소유 사업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된 이후 5년여 동안 가산동 교학사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14년 회계연도부터 보상비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이 반복되면서 예산 사용의 효율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19

년 수용재결 결정 후 공탁을 위한 예산을 금회 추경으로 요청한 상태이나 교학사 측의 완전한 합의를 얻어내지는 못하여 아직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해당 구역의 조속한 공사 추진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는 연례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교학사측과 조속하고 원만한 보상협의를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18.12.17.

'19.6. 예정



[그림] 보상평가 권리구제 절차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국회대로가 지닌 지역간 단절 및 상습정체, 주변지역 낙후 등 각종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의 차로수를 축소하여 녹지, 공원 등 시민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34억 3백만원 중 50.1%인 67억 13백만을 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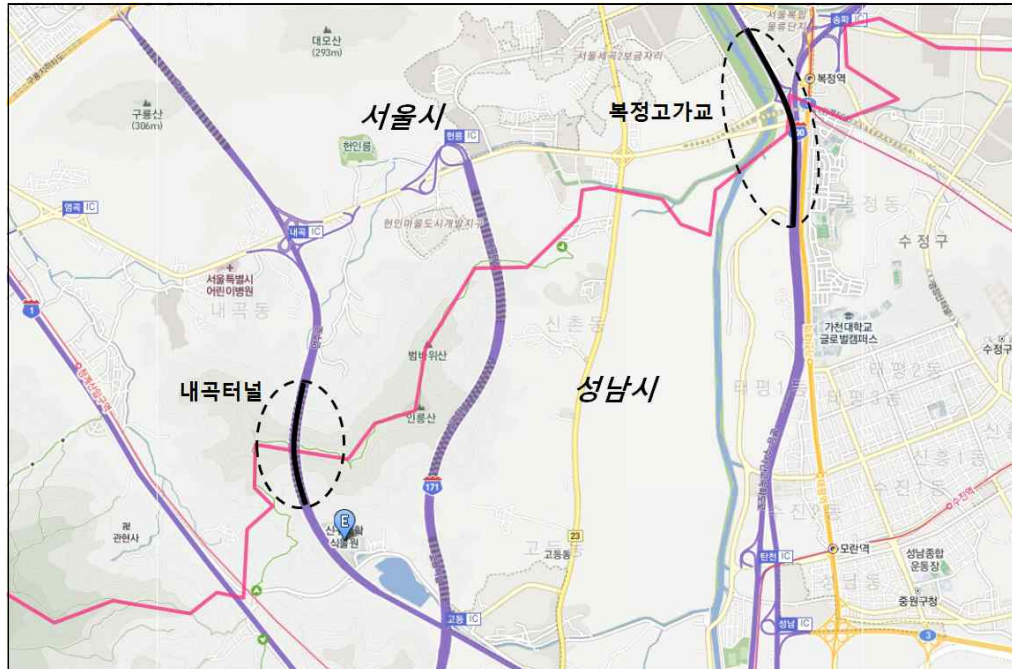
[그림] 위치도

- 이는 국회대로 지하차도와 제물포터널의 구조물이 중첩되는 1 단계의 동시 시공을 위해 당초 기존 제물포터널 시공사와 수 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공사비 협상이 결렬 ('18.3.7.)되어 공개경쟁입찰로 제3의 시공사를 선정('18.8.2.)하여 착공('18.8.8.)하기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134억원 중 전년도 사고이월액 92억원에 서 25억원이 선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67억원이 불용된 것임.
- 이 사업은 당초 2016회계연도 예산 135억원 중 92%인 128억 17백만원이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후, 이 중 72%가 재 차 사고이월되었고 2018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73%가 불용되어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 례에 해당되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고가차도 철거’ 사업은 보행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고가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47억 3천만원 중 25.8%인 38억 7백만원을 불용함.
 - 이는 당초 ‘18.7월 철거 예정이었던 한남2고가에 대해 공사중 교통대책 보완 및 녹색교통진흥지역⁸⁾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19년으로 철거시기를 조정(‘18.7.11.)했기 때문인데
 - ‘18년도 예산현액이 본예산 89억원에 ‘17년도 이월예산 48억 3천만원, ‘18년 10억원 증추경 편성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사전협의 절차 이행 미흡으로 인해 38억 7백만원이 불용된 것은 면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초래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라 판단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내곡터널의 1개소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시와 성남시 간 체결된 내곡터널과 복정고가교 유지관리협약에 의거해 서울시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7억 53백만원 중 35.1%인 2억 64백만원을 불용함.
 - 불용액의 세부내역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낙찰차액 6천만원, 유지보수공사·세척용역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3천 8백만원, 시설물관리 위탁용역 정산잔액 7천 9백만원, 전기요금 등 기타 관리비 잔액 3천 3백만원, 터널 내 DMB중계기 설치사업 취소 5천 3백만원으로,

8) 녹색교통진흥지역(‘17.3월 지정) : 한양도성 내부 주요도로를 4~6차로로 줄이고,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자동차 통행관리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 터널 내 DMB중계기 설치사업은 당초 성남시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었으나 터널 안전관리상 부적절하다는 성남시 판단에 의해 취소되어 당초 편성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성남시 간 유지관리협약에 따라 관리주체는 성남시이고, 비용부담을 제외한 유지관리상의 모든 책임은 성남시가 지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시와 성남시 유지관리 비용부담 비율은 해당시설물의 연장에 따라 내곡터널은 53(서울시):47(성남시), 복정고가교는 40(서울시):60(성남시)에 해당함.



[그림] 내곡터널 및 복정고가교

- 이에 성남시는 연간 유지관리계획에 의해 산정된 서울시의 유지관리비용 부담분을 서울시에 청구해 집행하고, 지출된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시에 정산 통보하고 있는 상황임.

- 비록 협약에 의거해 성남시가 복정고가교의 관리주체이기는 하나 서울시가 유지관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청구하는 유지관리비용의 적정성을 서울시 입장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불필요한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한강교량 태양광 설치’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⁹⁾의 일환으로 한강교량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던 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현액 5천 3백만원 중 74.9%인 4천만원을 불용함.

- 이 사업은 당초 서강대교 등 4개소에 목표발전용량 282kw로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시설계 용역을 취소하고 준공처리함에 따른 것임.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18.2.22.~7.23.
- 용역비 : 23,938천원
- 계약상대자 : 한일전기기술사사무소 대표 이상호
- 대상교량 : 서강대교, 마포대교, 구리암사대교, 광진교
- 태양광발전 목표 용량(kw/h)

합 계	서강대교	마포대교	구리암사대교	광진교
282	90	90	51	51

9)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17.11.16.)

-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선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성급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으로 자금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
 - 서울시 정책기조에 따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에 있어 지나치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전검토 및 타당성 여부 확인을 선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됨.
- ‘새남터다리 내진성능개선’ 등 총 10건의 도로시설과 내진성능개선 사업 중 5건의 사업에서 당해 연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함.

[표] 도로시설과 내진성능개선 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염창IC 내진성능개선	510	405	105	21%	○ 실시설계결과 내진보강대상 물량감소(받침교체32개소→20개소):104,540천원 ○ 계약심사절감액:660천원
동작교 내진성능개선	400	394	6	2%	
새남터다리 내진성능개선	250	92	158	63%	○ 실시설계결과 받침단가조정 공사비 감소 : 100,525천원 ○ 계약심사절감액:10,230천원 ○ 낙찰차액:23,000천원 ○ 물량정산등:24,501천원
독산1교 내진성능개선	200	68	132	66%	○ 실시설계결과 내진성능 개선방법변경(받침교체→전단기 설치)으로공사비감소:57,495천 원 ○ 낙찰차액:18,608천원 ○ 물량정산등:56,103천원
신내1교 내진성능개선	280	241	39	14%	
여의하류IC램프교 내진성능개선	597	377	220	37%	○ 실시설계결과 받침단가조정 등으로 공사비감소 :190,000천원 ○ 계약심사절감액:29,600천원

도림천복개(좌안) 내진성능개선	2,300	1,278	1,022	44%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터파기 결과 일부 부재의 설계심도와 현장기초심도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진성능 재검토 ○내진성능 재검토결과 보강대상 물량감소로 사업비감소 (당초기둥보강195개→82개)
도림천1복개 내진성능개선	587	236	351	60%	○관악구청에서 시행 중인 「도림천복개철거및친수공간조성 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 제외로 사업비감소 :304,206천원 ○낙찰차액:46,698천원
잠수교북단지하차도 내진성능개선	9	9	0	5%	
신답지하차도 내진성능개선	789	738	51	6%	

-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받침단가조정 2건 ('새남터다리', '여의하류IC램프교'), 내진보강방법 변경 1건('독산1교'), 보강대상 물량감소 1건('도림천복개(좌안)'), 타 사업과 중복구간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 1건('도림천1복개') 등으로,
- 상기의 단가조정, 보강방법 변경, 물량감소 등의 불용사유는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 체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체는 2018년 11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8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의 보도(歩道) 관련 업무를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로 이

관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예산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금 액		이체 승인일	사유
				감액	증액		
계			23,817	23,817	23,817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31	331		'18.11.12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31	'18.11.12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4,876	14,876		'18.11.12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14,876	'18.11.12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	10		'18.11.12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 유지관리	401-03 시설부대비			10	'18.11.12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5,000	5,000		'18.11.08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401-01 시설비			5,000	'18.11.08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창경궁로 등 3개노선 도시비우기사업	401-01 시설비	600	600		'18.11.08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창경궁로 등 3개노선 도시비우기사업	401-01 시설비			600	'18.11.08	조직개편 (2018.11.1.일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서울 속 순례길 관광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3,000	3,000		'18.11.08	조직개편 (2018.11.1.일자)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서울 속 순례길 관광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401-01 시설비			3,000	'18.11.08	조직개편 (2018.11.1.일자)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은 ‘간선도로망 확충’ 등 총 12건에 15억 68백만원으로 감리비 또는 시설비 부족분 총당 등을 위한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서초역~ 방배로간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22,156	147	-	‘18.3.2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등 반영 시 감리비가 부족 하여, 시설비 일부 를 감리비로 변경 하여 사용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서초역~ 방배로간 도로확장	401-02 감리비	908	-	147		
2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디지털3단지~두 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6,000	370	-	‘18.3.2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등 반영 시 감리비가 부족 하여, 시설비 일부 를 감리비로 변경 하여 사용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디지털3단지~두 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110	-	370		
3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천호대로(광나루 역) 확장	401-01 시설비	11,942	146	-	‘18.7.12	차질없는 공사현장 관리 및 연내 준공 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천호대로(광나루 역) 확장	401-02 감리비	148	-	146		
4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48,700	38	-	‘18.7.20	건설사업관리의 과 업내용이 변경(증 가)됨에 따라 감리 용역비 추가 확보 가 필요하여 시설 비 일부를 변경하 여 집행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월드컵 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1,300	-	38		
5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고가차도 철거	401-01 시설비	8,830	80	-	‘18.7.20	감리비 증액에 따 라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고가차도 철거	401-02 감리비	70	-	80		
6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금호로 확장	401-01 시설비	1,300	123	-	‘18.7.20	보상완료에 따른 공사시행으로 건설 사업 관리용역을 잘주함에 따라 용 역비가 필요하여,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금호로 확장	401-02 감리비	-	-	123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특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일부 변경 사용
7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고가차도 철거	401-01 시설비	4,730	154	-	'18.9.17	(사고이월 예산) 감리 추가시행에 따른 감리비 부족 으로, 시설비를 감 리비로 변경하여 집행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고가차도 철거	401-02 감리비	100	-	154		
8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 대교 남단)	401-02 감리비	734	69	-	'18.10.9	건설사업관리기술 자 투입인원 조정 등에 따라 절감된 감리비를 시설비 부족분으로 변경하 여 충당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 대교 남단)	401-01 시설비	8,416	-	69		
9	도로 계획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28,550	60	-	'18.12.12	차질없는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시 설비 일부를 감리 비로 변경하여 집 행
		간선도로망 확충(도시개발 특별)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2 감리비	1,250	-	60		
10	도로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05-01 자산및물품취 득비	209	198	-	'18.8.10	우천시 포트홀 보 수장비를 개발코자 하였으나, 입찰결 과(2회 유찰) 장비 제조,납품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개 발이 어려움에 따 라, 최근 도입된 수경성 상온아스팔 트를 사용하여 우 천시 도로 보수코 자 예산 변경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65,559	-	198		
11	교량 안전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1,272	85	-	'18.8.20	개봉철도고가 실시 설계 감리용역비 부족으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
		일반교량관리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2 감리비	600	-	85		
12	교량 안전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4,438	96	-	'18.12.18	(사고이월 예산)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 으로, 시설비 일부 를 감리비로 변경 하여 집행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532	-	96		
총 변경건수: 12건					227,855	1,568	1,568		

- 도시개발특별회계 변경사용 총 12건 중 10건은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충당해 사용한 것이며, 감리비 부족 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등 변경, 과업내용 증가, 감리 추가시행 또는 감리기간 연장 등임.
- 기 편성 감리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336.4%,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98.6%, ‘고가차도 철거’ 114.3%(‘18.7.20.)와 154.0%(‘18.9.17.) 2회, 그리고 ‘금호로 확장’ 감리비 신규 편성 등 변경사용에 따른 감리비 증가가 상식을 넘는 수준으로
- 이는 당초 감리비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거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감리비 증액 변경사용 현황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A)	변경 증액분 (B)	증액비율 (B)/(A)	변경승인일자
1	서초역~방배로간도로확장	401-02 감리비	908	147	16.2%	‘18.3.27
2	디지털3단지~두산길간지하차도건설	401-02 감리비	110	370	336.4%	‘18.3.29
3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	401-02 감리비	148	146	98.6%	‘18.7.12
4	월드컵 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1,300	38	2.9%	‘18.7.20
5	고가차도 철거	401-02 감리비	70	80	114.3%	‘18.7.20
6	금호로 확장	401-02 감리비	미편성	123	-	‘18.7.20
7	고가차도 철거	401-02 감리비	100	154	154.0%	‘18.9.17
8	신림~봉천터널건설	401-02 감리비	1,250	60	4.8%	‘18.12.12

9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2 감리비	600	85	14.2%	'18.8.20
10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532	96	18.0%	'18.12.18

○ 다음으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억 98백만을 변경사용했는데,

-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당초 우천 시 포트홀을 보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했으나 포트홀 보수장비 제조 및 납품 시장여건 미숙으로 입찰결과 2회 유찰되는 등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대신에 수중상태에서 보수 성능이 양호한 수정성 상온아스콘을 구매했다는 설명임.
-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우천 시 포트홀 보수장비의 개발가능성과 시장성 등 기본사항조차 검토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모양새가 되는 바, 의욕만 앞세운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바) 예비비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에서 영등포역고가 포트홀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5천만원을 지출함.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50	2018-10-26	노도로관리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

- 손해배상은 '17.6.30.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영등포고가차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유가족은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포트홀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17.9.12일 민사소송을 제기함.
- '18.9.14일 1심 판결 결과 원고 일부승소 함에 따라 서울시는 항소를 통해 제1심이 인정한 피고(서울시)의 책임 비율(40%)을 낮추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¹⁰⁾으로 판단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소요 예비비 : 금 50,249,090원 ※지급기준일 : 2018.10.17.

구분	시작일	종료일	총 일수	이율(연)	금액	비고
합계					50,249,090	
원금					46,800,000	
이자	2017-07-03	2018-09-14	439	5%	2,814,410	판결일
	2018-09-15	2018-11-01	48	15%	634,680	
	소계				3,449,090	

사) 차년도 사고이월

10) 위자료가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의 제한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피고의 책임 정도가 참작될 뿐이어서 결국 법원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하는 것인 바, 책임의 제한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항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범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항소심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정도, 항소심 소송비용 및 항소 기각 시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 소송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등 총 23건에 이월금액은 219억 62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49,642	6,182	12.5%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1,544	69	4.5%
도로계획과	안양교 확장	401-02 감리비	911	30	3.3%
도로계획과	도림로 확장	401-01 시설비	4,928	119	2.4%
도로계획과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401-01 시설비	8,709	109	1.3%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4,154	489	11.8%
도로계획과	금호로 확장	401-02 감리비	123	49	39.8%
도로계획과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401-01 시설비	15,442	2,393	15.5%
도로계획과	양재대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600	70	11.7%
도로계획과	안양천횡단 연결로(보도교) 신설	401-01 시설비	900	125	13.9%
도로관리과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66,353	786	1.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01-01 시설비	6,562	2,003	30.5%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 세척)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1,105	500	4.5%
도로시설과	도로기전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3,059	110	3.6%
도로시설과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116	70	60.3%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7,042	6,486	38.1%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401-01 시설비	150	35	23.3%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1,187	107	1%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401-02 감리비	685	55	8%
교량안전과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5,863	748	12.8%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401-01 시설비	14,780	636	4.3%
교량안전과	위커힐고가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1,325	786	59.3%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8,288	5	0.1%
계			233,468	21,962	9.4%

○ ‘올림픽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경관 조명을 스토리텔링으로 부각하기 위해 상징물 중심으로 공중에 빛이 투광하도록 개선하려는 2018회계연도 신규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현액 1억 16백만원 중 60.3%인 7천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3회에 걸친 좋은빛심의, 공공디자인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부서 의견 반영 등에 따라 용역준공이 지연(‘19.6월 준공예정)됨에 기인함.

- 또한, 당해연도 낙찰차액이 예산현액의 40%를 차지했다는 점까지 연계하여 살펴보면, 편성예산 전액(사고이월 60%, 불용

40%)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사례로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성산대교 성능개선’은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인 성산대교의 성능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확보 및 시설물 공용수명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70억 42백만원 중 38.1%인 64억 86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이는 성산대교 북단 가설교량 하부벤트가 지장물과 간섭되어 재설계 후 시공함에 따라 후속 공종인 교량 슬래브 철거 및 신설, 보수보강 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임.
 - 동 사업의 경우 바닥판 상태가 불량한 남·북단 접속교 구간에 대해 우선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월드컵대교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이 되어서야 본교 슬래브 재설치 등 본격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본예산 126억 1천만원에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액 64억 86백만원을 합하여 190억 96백만원임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마 .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18	45,508	-	-	386	13,451	-	31,671	45,508	31,017	14,491	-	-
2017	38,614	-	-	447	16,471	-	21,696	38,614	25,164	13,450	-	-
2016	40,500	-	-	407	17,265	-	22,828	40,500	24,029	16,471	-	-

가) 개 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3억 86백만원, 예치금회수 134억 51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316억 71백만원을 합한 455억 8백만원이며, 이 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로 기금 총액의 68.2%인 310억 17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4억 91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34억 5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20억 58백만원과 사용액 310억 18백만원의 차(10억 4천만원)를 합한 144억 9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10억 4천만원을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13,451	1,040	32,058	31,018	14,491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은 감소추세에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수입액 대비 굴착 복구공사비용(직접복구비, 사후정비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지출액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며,
- 이와 관련해 지난 5.16일 원인자부담금 납부 체계 개선과 복구비용 중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현실화를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된 것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음.

[표] 기금운용 현황

구분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결산)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결산)	2018년도 (결산)	
수입액	20,835	22,675	25,709	23,235	22,143	32,058	
원인자부담금	20,248	22,143	25,240	22,828	21,696	31,672	
이자수입 등	587	532	469	407	447	386	
지출액	19,671	23,313	24,268	24,029	25,164	31,018	
굴착복구공사	소계	19,086	22,953	23,818	23,777	24,962	30,873
	직접복구비	14,238	18,238	17,717	17,450	18,260	25,130
	사후정비비	4,187	4,167	5,553	5,568	5,218	4,382
	감리비및부대비	661	548	548	759	1,484	1,357
	기타(전산운용 등)	585	360	450	252	202	145
증감	증 1,164	감 638	증 1,441	감 794	감 3,021	증 1,040	
연도말 잔액(예치금)	16,462	15,824	17,265	16,471	13,451	14,491	

다) 기금지출 결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383억 51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63억 33백만원이 증액된 446억 84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지출액은 101.8%에 해당하는 455억 8백만원을 지출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38,351	44,684	-	44,684	45,508	-

- 지출계획액이 수정된 주된 요인은 굴착원인자(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관리청에 복구의뢰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 지출계획을 당초 383억 51백만원에서 446억 84백만원으로 증액하였고,
- 도로굴착복구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굴착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로굴착의 부득이한 측면은 인정되나 잦은 도로굴착이 사고의 원인과 도로포장체의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2018년)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지출액
비용자성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31,018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0,873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144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정 권고사항	내 용	소관실국 (부서명)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부실한 운영	<p>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목적 달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p> <p>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과목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p>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 (상황대응)
4	예비비 지출 의회 보고 미이행	예비비 지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기별 보고를 이행하여 시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권고함.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 (도로관리) (교량안전)
6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	재난대응 훈련 횟수(회)를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있으나 매년 시행되는 훈련 개최 수는 부서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없는 지표이므로 훈련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등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
62	패소 확정된 소송결과에 대한 예비비 지출 지양	<p>해당 예비비 지출 사례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환매권 관련 소송)는 예산 편성시 소송비용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예산을 예비비 지출로 회석시킨 사례임.</p> <p>향후에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미 패소 확정된 소송의 배상액이나 항소를 포기한 소송에 대한 배상액은 해당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출에</p>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소관실국 (부서명)
		<p>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함. 또한, 예비비 지출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함으로써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지키고, 긴급히 발생하는 우발적 재정수요에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p>	
68	<p>시범 사업 사전조사 미흡 및 타부서 선행 유사 사례 미공유</p>	<p>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본 건(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사장 안전관리)과 같이 새로이 시도되는 아이디어 사업이고 기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예산을 편성하여 검토절차를 거치는 것을 본 사업 예산편성의 조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유관부서에서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사례의 공유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유사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p>	<p>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p>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부실한 운영

(성인지 예산사업 / 기획조정실(총괄),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도시공간개선단]

가.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예산 제도는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집행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성인지 예산서를 수립하고, 이를 집행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는 제도임.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음.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의 사업 수는 271개이며, 성인지 예산 총액 2,270,362백만원 중 2,166,614백만원이 지출되어 95.4%의 집행률을 보임.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의 성인지 결산 총괄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0	1,917,211	1,844,713	96.2
일 반 회 계	242	1,810,857	1,762,022	97.3
특 별 회 계	18	79,248	60,154	75.9
기 금	10	27,106	22,538	83.1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1	2,270,362	2,166,614	95.4
일 반 회 계	238	2,121,584	2,027,750	95.6
특 별 회 계	24	139,729	132,566	94.9
기 금	9	9,049	6,298	69.6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살펴보면 다수 사업이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불특정다수로 설정하여 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분석, 평가하기 어렵게 작성하였음.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를 누락한 사업

연번	실국	사 업 명
1	도시공간개선단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성인지 결산서 목표치는 있으나 달성실적이 없는 사업

연번	실국	사 업 명
1	경제진흥본부	노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목표치 10,401명, 실적치 0명)

사업대상자 및 수혜대상자 불특정 사업

연번	실 국	사 업 명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	서울혁신기획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지원
3	서울혁신기획관	서울 청년활동 보장
4	서울혁신기획관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5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 주간기념행사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강화
8	여성가족정책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9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0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1	여성가족정책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3	여성가족정책실	누리과정 보육료
14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지원-어린이집 운영
15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6	경제진흥본부	상상산업 기반 조성
17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화장실환경 개선사업
18	경제진흥본부	창업보육센터 시설개선
19	경제진흥본부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0	경제진흥본부	서울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
21	복지본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22	시민건강국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23	시민건강국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24	시민건강국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25	도시교통본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6	도시교통본부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27	도시교통본부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연번	실 국	사 업 명
28	도시교통본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29	도시교통본부	자전거 안전 교육
3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31	문화본부	범죄예방 디자인
32	문화본부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33	문화본부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34	안전총괄본부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35	안전총괄본부	시민 안전교육 강화
36	안전총괄본부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37	안전총괄본부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38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39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40	도시재생본부	주민역량강화
41	도시재생본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시민공간 조성
42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43	도시계획국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나. 시정권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목적 달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과목표, 성평 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4. 예비비 지출 의회 보고 미이행

(예비비 / 기획조정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한 미준수

예산담당관실은 다음과 같은 2018년 2분기 예비비 승인내역 보고를 7월 말일까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분기 예비비 승인내역 보고시점인 2018년 10월에 하였음.

부서명	사업명	승인일자
재무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018-04-07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소송비용	2018-05-1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2018-05-3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겸재결 건설	2018-05-3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2018-06-07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주변 도로개설	2018-06-22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정비구역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2018-06-26

○ 소관 상임위원회 미보고

아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각 실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음.

부서명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일자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2018-12-1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2018-11-2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	2018-12-07
은평병원 원무과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2018-10-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주변 도로개설	2018-01-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주변 도로개설	2018-06-2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강동권역공영차고지조성공사	2018-01-1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4공구) 배상금	2018-01-2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기자촌~북한산길 간 부체도로 개설공사 배상금	2018-01-29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겸재결 건설	2018-05-3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8공구) 배상금	2018-07-3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우면산터널 재정 부담 배상금	2018-08-0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무상양도 부당이득반환 소송	2018-11-16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환매권상실손해배상청구소송	2018-12-20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2018-05-3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부도로사업소 배상금	2018-01-29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동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2018-08-17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	2018-01-2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 간접비	2018-01-29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소송비용	2018-05-1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	2018-10-16

나. 시정권고

예비비 지출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기별 보고를 이행하여 시의회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권고함.

6.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

(성과 보고서 / 기획조정실 총괄,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서울시립미술관, 교통방송)

가. 현황 및 문제점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음.

유형	구분	내용	비고
A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목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 여부 검토 - 상위 전략목표 또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정책사업 설정 예산편성금액과 성과목표의 일치성 여부 - 추경의 경우 성과지표 조정을 했는지 -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성과가 100% 이상 달성된 경우	계획 관련
B	성과지표의 타당성	- 성과지표 측정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경우 - 외부요인으로 달성되어서 부서의 업무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달성이 100% 보장되어서 성과로 볼 수 없는 경우	계획 관련
C	성과 측정 방법 적합성	실적이 조작 가능한 방법으로 측정된 경우 - 유효성이 부족한 만족도 조사 -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계획 관련
D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달성이 어렵지 않은 목표 설정, 즉 과거 실적 및 추세등과 비교하여 타당하게 설정되지 않은 경우(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가 낮은 경우 -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계획 관련
E	실적치 의정확성	임의로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 - 정책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경우 - 미실현 실적을 집계하는 경우 - 성과측정을 하지 않고 실적치 보고를 하는 경우	보고 관련
F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산식이 부적절한 경우 - 측정산식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 - 만족도 조사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점수체계가 부적정,	보고 관련

		조사방법이 부적정 등) - 추정치나 예정치로 산정하는 경우	
G	실적치 환류성 적정성	초과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미흡	보고 관련
H	결산검사 결과와 연계성	집행잔액 대비 성과달성률의 적정성 비교	보고 관련

각 부서의 성과지표 중 상기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 형
시민명예옴부즈만 상담실적(명)	옴부즈만 상담건 수	목표	2,050	2,200	D
		실적	3,411	3,957	
		달성률(%)	166%	179%	

□ 정보기획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 형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자수(천명)	서울시 홈페이지 연간 방문자수	목표	60,000	63,000	D
		실적	79,070	72,970	
		달성률(%)	132%	116%	
통합공간정보서비스 업무활용 수(건)	통합공간정보서 비스 접속자 수(월 평균)	목표	18,000	19,000	D
		실적	23,800	24,316	
		달성률(%)	132%	128%	

□ 기획조정실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 형
정기 및 수시평가 건수(건)	보고회 + 실국장 간담회 + 시장단 등을 통해 보고 한 개별사업 평 가자료	목표	255	255	D
		실적	323	394	
		달성률(%)	127%	155%	

자매우호 결연 도시 수(개수)	결연도시(누계)	목표	57건	65건	D
		실적	62	68	
		달성률(%)	109%	105%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인원 수(명)	선정인원(누계)	목표	770	810	D
		실적	791	823	
		달성률(%)	100%	100%	

□ 복지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어르신일자리참여(명)	참여인원수	목표	50,000명	52,000명	D
		실적	56,639명	66,617	
		달성률(%)	113%	12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전년도 사용승인 건축물 실태조사	목표	96.50%	96.50%	D
		실적	97%	98.70%	
		달성률(%)	101%	102%	

□ 도시교통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율(누적)(%)	노후 전동차 교체수/전체 전동차 수	목표	16.67	38.59	F
		실적	16.67	38.59	
		달성률(%)	100%	100%	
주택가 및 공동시설 공동주차장 조성(개소)	조성실적 확인	목표	10개소	10개소	G
		실적	5개소(792면)	7개소(704면)	
		달성률(%)	50%	70%	
도로공간구조 재편(개소)	도로공간구조 재 편 노선 수	목표	1	1	C
		실적	1	1	
		달성률(%)	100%	100%	

□ 문화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률(건)	접수건수 대비 선 정건수	목표	45	45	A,B, C,G
		실적	39.6	44.8	
		달성률(%)	88%	99%	
범죄예방디자인 시범 확대 적용 개소 수(개소)	적용 개소수	목표	7개소	5개소	B,C, D
		실적	10개소	7개소	
		달성률(%)	143%	140%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교육 수강인원(명)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목표	900명	1000명	B, C E, F
		실적	900명	3,874명	
		달성률(%)	100%	387%	

□ 기후환경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서울에너지복지시민 기금 모금금액(원)	모금금액(원)	목표	800,000,000원	800,000,000원	D
		실적	1,307,743,006원	2,759,545,694원	
		달성률(%)	163%	34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목표	14,967	20,115	D
		실적	28,751	37,259	
		달성률(%)	192%	185%	

□ 시민건강국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시립병원이용인원(명)	병원별이용연인원 (외래,입원환자수)	목표	3,130,000	3,140,000	D
		실적	3,206,912	3,214,311	
		달성률(%)	102%	102%	
금연클리닉서비스 상담자수(명)	각상담자수, 금연클리닉수	목표	65,000	65,000	B, D
		실적	74,808	65,685	
		달성률(%)	115%	101%	
반려동물광견병 예방접종(마리)	자치구별 추진실적 취합	목표	90,000	90,000	D
		실적	90,000	94,441	
		달성률(%)	100%	105%	
야생동물미끼백신 살포(마리)	백신살포 용역실시 결과보고	목표	80,000	80,000	B
		실적	80,000	80,000	
		달성률(%)	100%	100%	
농수축산물안전성 검사실적(건)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목표	51,200	51,200	D
		실적	53,925	59,400	
		달성률(%)	105%	116%	
식의약품및한약재 안전성검사실적(건)	식의약품 및 한약재 안전성 검사 건수	목표	31,350	31,350	D
		실적	31,985	29,953	
		달성률(%)	102%	96%	
미생물및감염병 예방검사실적(건)	감염병 등 검사 건수	목표	41,500	51,000	D
		실적	58,000	70,184	
		달성률(%)	139%	137%	

대기오염물질 검사실적(건)	대기환경 등 검사 건수	목표	233,520	235,820	D
		실적	235,970	237,182	
		달성률(%)	101%	101%	
수질토양오염물질 검사실적(건)	수질토양 등 검사 건수	목표	45,430	43,630	D
		실적	45,440	47,099	
		달성률(%)	100%	108%	
시책연구사업건수(건)	연구과제 건수	목표	54	54	B,D
		실적	54	54	
		달성률(%)	100%	100%	
일평균외래환자수(명)	OCS 마감내역	목표	334	340	D
		실적	383	419	
		달성률(%)	114%	123%	
중독·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운영(회)	프로그램 운영 횟수	목표	9,100	9,100	D
		실적	11,258	7,762	
		달성률(%)	124%	85%	
노인성질환재활및 치매진료실적(건)	통합의료 정보시스템D/B	목표	63,900	64,000	D
		실적	68,515	64,084	
		달성률(%)	107%	100%	
환자별맞춤형 프로그램운영실적(회)	프로그램 운영실적	목표	7,800	7,800	D
		실적	9,000	8,600	
		달성률(%)	115%	110%	

□ 안전총괄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 형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명)	안전보안관 활동 인원	목표	800	1000	D
		실적	1022	1171	
		달성률(%)	127%	117%	
재난대응 훈련 횟수(회)	훈련계획 보고서	목표	4	4	B, C, D
		실적	4	4	
		달성률(%)	100%	100%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구)	안전취약가구 정 비완료수	목표	20000	20000	D
		실적	24156	23481	
		달성률(%)	120%	117%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개소)	보수보강 사업 개소	목표	20	20	D
		실적	31	20	
		달성률(%)	150%	100%	

지하도상가 임대료 등 징수실적(억원)	징수실적	목표	0	567	B,
		실적	542	621	C,
		달성률(%)	100%	100%	D
하도급 실패 현장점검 개소수(개소)	현장점검	목표	100	100	B,
		실적	100	100	C,
		달성률(%)	100%	100%	D
친환경 도로포장(a)	친환경 도로포장 실적	목표	3,200	3,400	G,
		실적	3,328	4,394	H
		달성률(%)	104%	129%	
도로사업소 운영 개선(회차)	사무환경개선 운 용계획	목표	4	4	B,
		실적	4	4	C,
		달성률(%)	100%	100%	D, H
자동차전용도로 포트홀 발생 예방(건)	연간 포트홀 발생 건수	목표	5214	5199	B,
		실적	5180	7746	H
		달성률(%)	100%	52%	

□ 도시재생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추진율	목표	40	20	A, B, D, G
		실적	42	20	
		달성률(%)	105%	100%	
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	예정자락 남산공 원 조성사업의 기 본계획 마련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목표	30	82	D
		실적	30	82	
		달성률(%)	100%	10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서울역 일대 도시 재생사업의 '18년 예산 집행률로 측 정	목표	75	75	A, C, D
		실적	75	60	
		달성률(%)	100%	80%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실적확인	목표	70	60	A, B, D
		실적	70	60	
		달성률(%)	100%	100%	
달성률(%)	예산집행률	목표	100	100	A, B, C, D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 주택건축국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건축문화사업 직접시민 참여인원(명)	건축문화사업 참 여인원(누계)	목표	15,000	21,000	C,G
		실적	16,933	21,373	
		달성률(%)	113%	102%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호)	공급실적 반영	목표	15,000	17,000	B,D
		실적	24,487	24,596	
		달성률(%)	163%	145%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호)	공급실적 반영	목표	15,000	20,000	B,D
		실적	7,819	4,023	
		달성률(%)	52%	20%	

□ 푸른도시국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에코스쿨 조성 개교수(개소)	현장 및 서류 점검	목표	20	30	D
		실적	56	66	
		달성률(%)	280%	220%	
공원이용 프로그램 및자원봉사참여인원 (천명)	프로그램 등 참여인원	목표	82	84	D
		실적	94	130	
		달성률(%)	114%	154%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프로그램 참여인원	목표	78	80	G
		실적	189	263	
		달성률(%)	242%	328%	

□ 물안전순환국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하천점용료징수 (자치구 교부금)(원)	하천점용료 징수 (자치구 교부금)	목표	1,340,000,000원	1,300,000,000원	E
		실적	1,199,789,340원	995,786,000원	
		달성률(%)	90%	77%	

□ 한강사업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시민주체 문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횟수	목표	520	390	D
		실적	2,327	1,934	

운영 횟수(회)		달성률(%)	448%	496%	
제방, 접근통로 안전등급(등급)	안전등급 확인	목표	B	B	B
		실적	B	B	
		달성률(%)	100%	100%	
한강숲 조성 식재수(주)	나무 식재수	목표	50,800	55,000	D
		실적	175,120	166,561	
		달성률(%)	345%	303%	

□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교육과정 운영이수율(%)	(참여인원/기수별 목표인원)x100	목표	91	92	D
		실적	101	128	
		달성률(%)	110%	139%	
핵심가치교육 운영이수율(%)	(참여인원/기수별 목표인원)x100	목표	96	97	D
		실적	111	98	
		달성률(%)	115%	101%	

□ 서울시립미술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소장작품 구입 및 기증 수(점)	소장 작품 수집 수 확인	목표	200점	200점	A
		실적	260점	162점	
		달성률(%)	130%	81%	

□ 교통방송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교통FM(95.1MHz) 청취율(%)	MRS(정량조사 4회) ※ '17년부터 조사 방법변경	목표	5.8	7.6	A, B, D, G
		실적	10.1	15.1	
		달성률(%)	174%	199%	
시민생활밀착형 뉴스보도(건)(건)	뉴스보도 건 수	목표	15500	15500	B, C
		실적	15513	15530	
		달성률(%)	100%	100%	
영상자료 아카이브 운영(건)(건)	인제스트 목록 건수	목표	6200	6200	B
		실적	15885	10262	
		달성률(%)	256%	165%	

□ 의회사무처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회의록발간(회)	발간횟수	목표	5회	5회	B,D
		실적	6회	6회	
		달성률(%)	120%	120%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회)	운영실적	목표	12회	12회	B,D
		실적	14회	13회	
		달성률(%)	100%	108%	
서울의회 소식지발행(회/부)	운영실적	목표	6회/255,000부	6회/270,000부	B,D
		실적	6회/255,000부	6회/270,000부	
		달성률(%)	100%	100%	
의정모니터운영(회)	운영실적	목표	12회	12회	B
		실적	12회	12회	
		달성률(%)	100%	100%	
의정현안 여론조사(회)	운영실적	목표	10회	10회	B
		실적	9회	10회	
		달성률(%)	90%	100%	
해외자매도시교류및국 제회의참석(회)	운영실적	목표	11회	10회	D
		실적	13회	13회	
		달성률(%)	118%	130%	
접수민원현장조사및간 담회개최(건)	운영실적	목표	100건	100건	D
		실적	126건	104건	
		달성률(%)	126%	104%	
의회입법 지원연구용역(건)	운영실적	목표	25건	26건	D
		실적	34건	31건	
의회입법 지원연구용역(건)	운영실적	달성률(%)	136%	119%	
의회전문도서관 운영(건)	운영실적	목표	4,000건	4,000건	D
		실적	5,019건	5,347건	
		달성률(%)	125%	134%	
시민의견청취를위한공 청회및토론회개최(회)	운영실적	목표	30회	30회	D
		실적	53회	31회	
		달성률(%)	177%	103%	
시민과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회)	운영실적	목표	2회	1회	B
		실적	2회	1회	
		달성률(%)	100%	100%	

□ 감사위원회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유형
일상감사실시건수(건)	일상감사 결과보고서 실시 횟수	목표	280	530	D
		실적	645	772	
		달성률(%)	230%	146%	

나. 시정권고

각 유형별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구분	개선 권고사항
A	성과관리체계의 적합성	① 상위 전략목표 또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② 추경을 한 경우 당초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
B	성과지표의 타당성	①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기간별 연속성을 유지할 것. ② 외부요인으로 달성되어서 부서의 업무실적으로 볼 수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③ 달성이 100% 보장되어서 성과로 볼 수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C	성과측정방법의 적합성	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②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D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 말 것. ②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하지 말 것.
E	실적치의 정확성	
F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① 유효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측정산식을 개발 할 것. 산식이 부적절한 경우 ② 부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실적으로 집계하지 말 것.(예, 부서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가 근무기관에 돌아가서 한 전달교육 횟수 등)
G	실적치 환류 적정성	초과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하게 할 것.
H	결산검사결과와 연계성	

지적된 성과지표가 많아서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서 개선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개별 개선 권고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명예옴부즈만 상담실적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비해 상당히 낮은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 목표를 상당 부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측정되었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보기획관>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비해 낮은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 당기의 실적이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초과 달성으로 측정되었음.

○ <정보기획관> 통합공간정보서비스 업무활용 수의 경우 전년도 실적에 비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음.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획조정실> 자매우호 결연도시 수 및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인원의 경우 당기의 증감이 아닌 누계로 측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기 중 증감이 없었다고 가정해도 달성률이 100%에 가깝게 측정이 됨. 전체 결연도시 수 및 명예시민 수와 함께 당기의 증감도 반영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교통본부> 1~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율(누적)의 경우 전체 전동차 수 대비 노후전동차 교체수를 성과지표 산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체 노후전동차 수 대비 교체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건축국> 건축문화사업 직접시민참여의 측정방법을 누계참여인원으로 하고 있어 연도별 외부요인(예:2017년 서울세계건축대회)

을 배제할 수 있으나 연도별 달성성과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누계참여인원관리와 함께 당해연도 달성률을 병행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총괄본부> 재난대응 훈련 횟수(회)를 성과지표로 산정하고 있으나 매년 시행되는 훈련 개최 수는 부서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없는 지표이므로 훈련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등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푸른도시국>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하므로 납득할 만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목표 설정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물안전순환국> 성과평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작성하였으므로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서울시립미술관> 당초 목표 설정시 예산보다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조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과지표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목표치 설정의 예산변동에 따른 조정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교통방송> 교통FM청취율의 2018년 목표가 2017년도 실적인 10.1%에 못 미치는 7.6%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지표 목표 산정이 적정하지 못 하므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성과보고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운용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각 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 성과보고가 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2. 패소 확정된 소송결과에 대한 예비비 지출 지양

[예비비 / 안전총괄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함.

그동안 서울시는 소송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소송 종료 시기 및 손해배상액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많았음.

안전총괄본부 소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두 건의 환매권 관련 소송이 있었으며 두 건 모두 2017회계연도에 판결이 났고, 사업부서에서도 2017년 6월과 9월 각 소송 건에 대해 항소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됨.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손해배상 소송현황】

소 제기 일	2017. 2.23	2016. 5.19
소송가액	337,330천원 (이자 등 총 지급액 423,874천원)	709,124천원 (이자 등 총 지급액 900,871천원)
판결일	2017. 6.14	2017. 8.18
항소포기 결정일 (서울시)	2017. 6.30	2017. 9. 5

따라서, 패소에 따른 비용부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2017회계연

도 예비비로 해당연도에 지출하거나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예비비 지출 사례는 예산 편성시 소송비용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예산을 예비비 지출로 회석시킨 사례임.

나. 시정권고

향후에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미 패소 확정된 소송의 배상액이나 항소를 포기한 소송에 대한 배상액은 해당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함.

또한, 예비비 지출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출함으로써 예비비의 편성취지를 지키고, 긴급히 발생하는 우발적 재정수요에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함.

68. 시범 사업 사전조사 미흡 및 타부서 선행 유사 사례 미공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사업 / 안전총괄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동 예산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한 시범사업 예산(1억원)임.

상기 예산 편성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¹¹⁾와 유관부서 검토회의¹²⁾를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나, 2016년에 추진되었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사 용역(근로자 위치확인시스템 검증사업) 실패 사례,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시범사업의 성격, 2018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예산낭비로 전락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착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예산 전액을 불용하였음.

〈 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원인행위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불용율
계	100	0	0	0%	0	100	100%
사무관리비	5	0	0	0%	0	5	100%
시설비	95	0	0	0%	0	95	100%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11) 2018년 4월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요약

- 시범사업만으로 IoT 기술의 적용성이나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임
- 건설현장에 예상치 못한 여건들이 많아 시범사업의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움
- 시범사업 보다는 기술의 바탕이 되는 플랫폼 개발 및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12) 2018년 6월 유관부서 자문회의 결과 요약

-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은 성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용역 업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시범사업 보다는 시범사업의 로드맵이 되는 기본계획 또는 ISP(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이 선행 필요

어지지 않았고, 과거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참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전액 불용이 되었음.

나. 시정권고

안전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진지한 고민 결과 추진된 사업임은 높이 평가하나,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 후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것임.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본 건과 같이 새로이 시도되는 아이디어 사업이고 기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예산을 편성하여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본 사업 예산편성의 조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유관부서에서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사례의 공유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유사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